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.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접수일자및제출일자 : 1997. 6. 5 (박규호의원 외 6인)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 5

다. 상 정 일 자 : 1997. 6. 24 (제59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'97. 1. 1 기획실의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출석.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중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

나. 주요골자

○ 본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.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"국장,담당관,실.과장" 을 "실장,국장,담당관,과장"과 동일직급이상 인자로함

○ 소속공무원중 구본청의 "실.과장" 과 동일 직급이상 인자를 "담당관, 과장 " 과 동일 직급이상인자로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(실.국 설치) 규정에의거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.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"실장. 국장. 담당관. 과장" 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